

# 4단계 BK 21 교육연구팀 운영집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베이비붐세대의 치료레저 활성화를  
위한 응용스포츠산업 교육연구팀’

2020. 9. 1. ~ 2027. 2. 28.

## 4단계 BK 21 교육연구팀 운영집

###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 ‘베이비붐세대의 치료레저 활성화를 위한 응용스포츠산업 교육연구팀’

제정일: 2020년 9월 1일  
개정일 : 2021년 12월 24일

### I. 사업단 운영집 총칙

1. (목적) 본 운영집은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베이비붐세대의 치료레저 활성화를 위한 응용스포츠 산업 교육연구팀’ (이하 ‘본 교육연구팀’ 이라 한다)의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운영집은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에 선정된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본 교육연구팀’ 과 사업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및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 (내용) 본 운영집은 본 사업단(팀)의 사업 비전 및 목표, 사업단 구성 및 조직, 대학원 교육 및 연구,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직원 운용, 참여 전임교원 운용, 연구업적 관리, 국제화 사업 등의 운영 지침을 규정한다.
4. (개정) 본 운영집은 본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
5. (기타)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교육부 훈령,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관리운영 지침 및 연세대학교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운영 내규를 준용한다.

### 부칙

- (1) (시행일) 본 운영집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II. 교육연구팀의 비전 및 목표

### 1. 교육연구팀의 비전

(1) 본 교육연구팀은 상대적 여가 소외 세대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주된 인구 블록으로 평가받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상에서 치료레저를 통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교육연구팀의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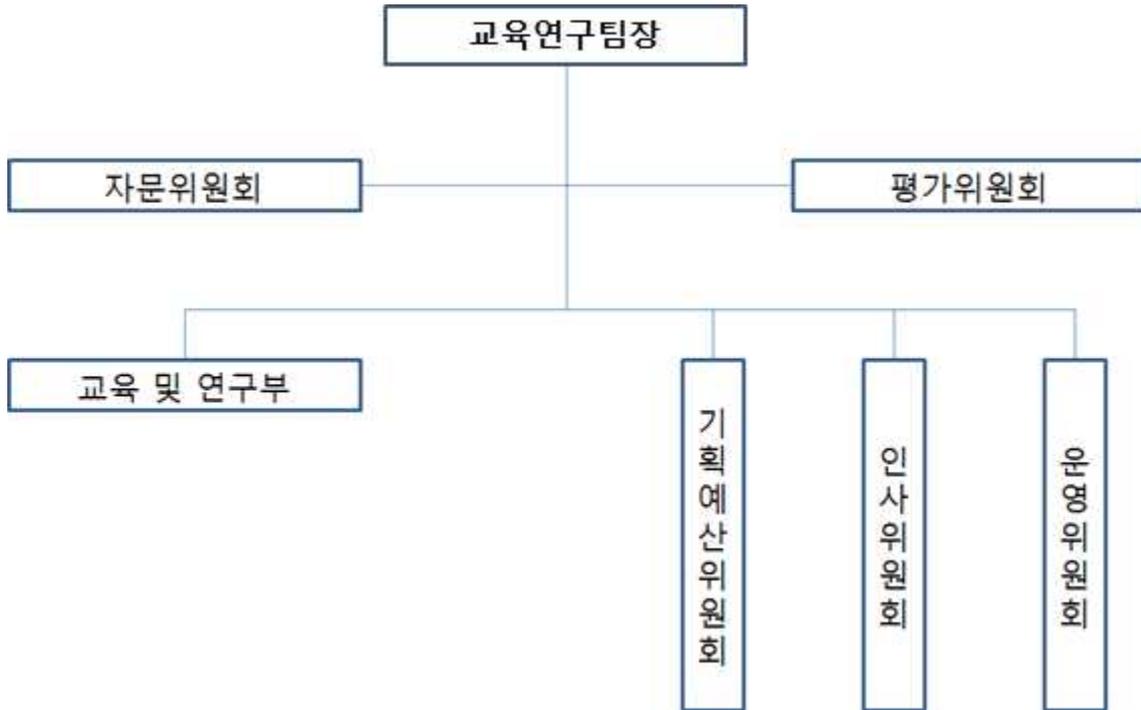
(2) 본 교육연구팀은 치료레저를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응용스포츠 교육연구팀으로써 그 역할과 위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임.

### 2. 교육연구팀의 목표

(1) 상대적 여가 소외 세대이면서 동시에 한국 사회의 주된 인구 블록으로 평가받는 베이비붐 세대의 일상에서 치료레저를 통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교육연구팀의 주제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노인을 소외계층으로 분류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베이비부머세대)에 대응하기 위한 학습자 맞춤형 치료레저교육을 설계하고 전문 인력 양성하는 것이 본 교육연구팀의 주된 목표임.

### Ⅲ. 교육연구팀 조직 및 세부업무

#### 1. 교육연구팀 조직도



2. 교육연구팀 조직별 세부 업무

부/위원회	업 무
교육 및 연구부	위원장: BK 4단계 두뇌한국 21 교육연구(팀)장 ○ 교과목 체계 및 교과 내용 정립 ○ 학부/대학원 교과목 이수 규정 및 학점 교류 ○ 학사 일정 관리 ○ 졸업이수 심사관리 ○ 논문 작성 및 게재 지원
기획예산위원회	○ 위원장: BK 4단계 두뇌한국 21 교육연구(팀)장 ○ BK21 플러스 사업 업무 총괄 ○ 교육연구팀 예산 기획 및 배정
인사위원회	○ 위원장: BK 4단계 두뇌한국 21 교육연구(팀)장 ○ 위원 : 스포츠응용산업학과 학과장 및 전임교원 ○ 교수 업적 평가에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 ○ 참여교수 승진, 승봉 결정, 신입 교수 선정 ○ BK 4단계 두뇌한국 21 신진연구인력 선정 ○ 교육연구팀 참여 교수, 참여대학원 IN&OUT 결정
운영위원회	○ 위원장: BK 4단계 두뇌한국 21 교육연구(팀)장 ○ 위원 : 스포츠응용산업학과 학과장 및 전임교원 ○ BK 4단계 두뇌한국 21 지원 대상 대학원생 선발 ○ 국제학술대회, 해외 연수, 학점취득 프로그램 지원 대학원생 선발 ○ 국제교류 사업 추진 ○ 콜로키움 및 학술대회 기획 ○ 교육연구팀 총괄 연구 기획 ○ 내부운영 업무 관리(장학금 및 인건비) ○ 행정직원 관리 ○ 공간 활용 및 배치 ○ 연차보고서를 비롯한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관련 보고서 작성 ○ 홈페이지 운영 관리
자문위원회	○ 내부 자문위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전임교원 ○ 외부 자문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BK 4단계 두뇌한국 21 교육연구(팀)장이 내부 자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
평가위원회	내부 평가위원회: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자체 평가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위원장: BK 4단계 두뇌한국 21 교육연구(팀)장)

#### IV.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1.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지원 대학원생 선발 지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BK 4단계 두뇌한국 21 “베이비붐세대의 치료레저 활성화를 위한 응용스포츠산업 교육연구팀” 소속 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본 규정 시행을 위한 BK 4단계 두뇌한국 21 장학위원회(이하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장학위원회는 교육연구팀장(위원장), 교육연구팀장이 임명하는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참여교수 4인으로 구성한다.

제4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재학 중인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참여가능한 대학원생으로 선발가능하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 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지급액)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평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입학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 월 70만원 이상

2. 입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 월 130만원 이상

3.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수료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 과정수료생 : 월 100만 원 이상

제6조(지원기간) 참여대학원생 지원은 과제수행기간인 2020년 9월 ~ 2027년 2월 까지 한 학기 단위로 지원한다.

제7조(참여대학원생 제외자)

① 상근직장 근무자(4대보험 가입여부로 확인)

② 해당학기 휴학자

③ 일정기간동안 연구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평가기준) 지원대학원생은 선발평가기준은 [표1]에 기재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교육연구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표 1] 지원대학원생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실적 기간
학부성적	학부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 (전 학기 평량 평균을 및 백분율을 기준)		학부성적 전체성적
영어시험성적	50점 만점(토익 990점 기준)		최근 2년
논문실적	1) SCI(E) 논문 (published만 인정)	한 편당 200점	최근 2년
	2) 국내 논문 (published만 인정) & SCI(E) 이외의 논문	한 편당 50점	최근 2년
학술발표 (최대100점)	국 외	30점(Oral)	최근 2년
		20점(Poster)	
	국 내	15점(Oral)	
		10점(Poster)	
논문 및 학술발표 반영비율	1인 연구 100% 2인 연구 70% 3인 연구 50% 4인 이상은 25%		최근 2년

## V. 참여교수 관련

### 1.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제1조(목적) 참여교수의 연구실적 및 교육연구팀의 기여도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량화, 객관화 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구팀의 재편성 및 성과급 지원의 근거로 삼는다.

제2조(평가대상 기간)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교수의 평가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다.

- ① 평가는 상기 제1조(목적)에 근거하여 교육연구팀 운영에 필요시 실시하며,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BK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개시 이후 평가는 최근 2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제3조(평가) 교육연구팀이 추구하는 바가 연구력의 질적인 향상에 있음을 감안할 때 평가항목은 연구영역을 우선시 한다.

- ① 논문은 SCI(E)에 등재된 것으로 최근 2년간 출판된 논문의 건수와 IF(Impact Factor)의 합으로 한다. 단, IF는 해당 출판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주저자의 수를 감안하여 기여도를 인정하고(단일 주저자 1, 2명의 주저자 0.7, 3명이상 주저자 0.5), 공저자는 1/N만 인정한다 (N은 해당 논문의 총저자 수를 말한다).
- ③ 교육연구팀 내 공저자 논문은 주저자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참여교수의 선발기준) 참여교수의 선발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②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은 연구실적을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Cell, Science, Nature를 포함한 IF가 20이상인 논문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교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④ 그 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참여교수의 교체기준) 참여교수의 교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참여교수 자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① 중대한 건강 이상 및 사망
- ② 연구실적 및 사업 참여 실적 저조
- ③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④ 기타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2.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BK 4단계 두뇌한국 21 교육연구팀에 소속된 참여교수의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과급 지급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교육연구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
- ②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교육연구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1인당 480만원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③ 교육연구팀 기여도에 대한 참여 교수의 평가 시 교육연구팀장의 평가 점수 비율을 최소 30% 반영 하도록 한다.
- ④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표 2>에 따른다.
- ⑤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4명에게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아래 표의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한다.

[표 2]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 기간
참여 교수의 연구 실적	해외저명 학술지 논문 수(편당 30점)	최근 2년
	국내 학진 등재지, SCOPUS 논문 수, 학술저서 (편당 20점) 국내 학진 등재후보지, 기타학술지 논문 수 (편당 10점)	
참여대학원생 실적	지도 학생 장학금 지급 인원 수(인당 10점)	최근 2년
산학 협력 실적	특허 출원 실적(20점)	최근 2년
	기술 이전 실적(20점)	최근 2년
	사업화 실적(20점)	최근 2년
	창업 실적(20점)	최근 2년
	연구비 수주(20점)	최근 2년
기여도 평가 (60점)	교육연구팀 기여도 - 교육연구팀장 평가 총점 중 30% 반영	

순위	A	B	C	D	E
비율	25%	22%	20%	18%	15%

- 참여대학원생의 장학금 지급은 실적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세분화된 항목을 통합
- 총점 = (배점\*각 항목 실적 건수)+기여도평가 점수

## VI.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 제1조(신진연구인력)

- ①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팀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 후 연구원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④ 제1항에 따른 박사 후 연구원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 후 연구원은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 후 연구원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교수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교육연구팀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 ⑦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⑧ 신진연구인력은 교육연구팀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연구팀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 ⑨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⑪ 본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계약교수는 학기당 교내 6학점이내, 교외 3학점이내 강의가능
- ⑫ 신진연구인력 공개채용 절차
  1. 연구소, 대학, 학과 홈페이지 또는 외부포털 등 5일 이상 채용 공고문 게시
  2. 각 연구소에는 비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전임교원 2인 이상 구성)하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접수 및 심사를 자체 진행함.
    - \* 학과 또는 대학인사위원회, 연구소 운영위원회로 같음할 수 있음.
    - (회의록 작성하여 공문 첨부)
    - \* 심사진행은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심사 등: 필수아님)로 진행함.

제2조(산학협력 전담인력)

- ① 대학의 장은 교육연구팀의 사업목적 달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조(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

제1조(목적) 본 규정은 BK 4단계 두뇌한국 21 교육연구팀에 소속된 신진연구인력의 성과급 지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성과급 지급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행정, 산학협력 및 교육연구팀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
- ②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진연구인력의 교육연구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1인당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 ③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표 3>에 따른다.
- ④ 4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4명에게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아래 표의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한다.

[표 3] 신진연구인력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 기간
연구 실적	해외저명 학술지 논문 수(편당 30점) 국내 학진 등재지, SCOPUS 논문 수, 학술저서 (편당 20점) 국내 학진 등재후보지, 기타학술지 논문 수 (편당 10점)	최근2년
교육연구팀 기여도	BK21 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및 기타업무(참여인력관리, 연구비 관리, 연구업적 관리등) (100점)	최근2년

구분	A	B	C
점수	350점 이상	250점 이상	150점 이상
분배	3,000 - 2,000	2,000 - 1,000	1,000

단위 : 천원

Ⅶ. 4단계 BK 21 지원비

제1조(국제학술대회지원)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학술대회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국제협력경비 집행 인정기준
  - 4개국 이상 참여
  - 구두발표 총 논문이 20건 이상

-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 ② 지원금액은 항공료의 실제소요 금액 및 체제비로, 항공료는 영수증 청구 금액만큼, 체제비는 실비용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동일 학생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하여 참가 제경비를 지원한다. 체제비는 2주 이내에 한해 지원 될 수 있다.
- ③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
- ④ 학회 참가 전 참가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학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 및 Boarding pass, 여권사본을 제출해야한다.

가. 참가 전 신청서류

1. 여비지급신청서 1부(별첨 5호 서식)
2. 국제학술대회 인정·지원기준 확인서 1부(별첨 6호 서식)
3. 발표논문 및 학술회의 팸플렛 (일정 및 발표자 일정 명시) 1부
4. 항공권 INVOICE 1부
5. 학회 Accept Letter 1부
6.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나. 참가 후 제출서류

1. 국제학술회의 참가 출장보고서 1부(별지 7호 서식)
2. 항공권 보딩패스 원본(e-ticket 또는 항공 ticket) 1부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출입국 stamp 확인 및 신분확인 되는 면 각 1page) 1부
4. 학회 프로그램 책자 및 본인 논문 게재 부분 1부
5. 학회 등록비 영수증 1부

제 2조(장기해외연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이 해외 기관을 방문하거나 장·단기 해외연수를 하는 경우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단기 해외 연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외국에서 개최되는 저명한 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경우(단기해외연수)
  - 연수기간이 15일 이내의 해외 기관으로의 연수인 경우(단기해외연수)
  - 연수기간이 15일 초과인 해외 기관으로의 연수인 경우(장기해외연수)
2. 대학원생이 해외대학 저명교수의 지도나 해외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장기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기연수지원대상은 교육연구팀 소속의 참여 대학원생으로 학업성적, 연구 진행성과, 외국어 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타 소양이 우수한 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얻은 자로 한다. 선발 기준은 어학능력자를 대상으로 학생의 연구능력과 학업성적을 고려하여 해외 연수생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참여교수의 추천서를 제출하고, 교육연구팀장이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3.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체제비(대학여비 기준; 숙박비는 참여교수 및 연구교수지급)이며, 학회등록비 1인당 300만원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외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5. 장기해외연수생의 지원 기간은 15일 초과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6. 대상자는 학회 참가 전 [국제협력프로그램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학회 후 [국제협력프로

그램 결과보고서] 및 Boarding pass, 여권사본을 제출한다.

7. 장, 단기 해외연수 지원자가 다수일시 지원대학원생 선발기준 [표 1]의 근거 하에 가장 높은 점수인 대학원생을 1순위로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8. 단, 위 사항의 최종 결정은 교육연구팀장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해외석학초청) 교육연구팀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외석학초청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구팀 관련 분야에서 저명한 국내외 학자들을 초빙하여 세미나 개최와 지속적 교류를 지원하며 교육연구팀장은 연구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2. 초빙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3.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숙박비, 자문료[별표 2. 강사료 지급기준], 회의비이며, 미주/유럽권 1인당 총비용 350만원, 아시아권 1인당 총비용 25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연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4. 지원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5. 해외학자의 강사료는 본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제 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교육연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6. 해외학자 초빙 시 활용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필히 제출해야한다.

제4조(연구활동지원비) 교육연구팀 연구활동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BK 4단계 두뇌한국 21 참여 대학원생이 학술 논문 게재를 위해서 국내, 국제 학회에 투고하는 경우, 논문제반 경비의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
2. BK21 플러스 미 참여 대학원생이 학술 논문 게재를 위해서 국내, 국제 학회에 투고하는 경우, 국내 50만원이내, 국제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각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팀장과 교육 및 연구부에서 지원 여부 결정

제5조(부실학술활동 체크리스트) 해외논문투고 및 학회 참석 시 점검사항

- 해외논문투고

- ①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 ②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 ③ 편집위원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④ 명확한 동료평가(peer review)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 ⑤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합니까?

- 해외학술활동

- ① 학회 개최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 ②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③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④ 범위와 목적이 관심분야에 적합합니까?

⑤ 기초 연설자 및 편집위원들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VIII. 평가

제1조(개요) 교육연구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기적인 연구체제의 지속적 구축,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 성과의 꾸준한 달성을 위해 교육연구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BK 4단계 두뇌한국 21 교육연구팀 운영의 전반적 평가 (기능, 성과,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측면)
2. BK 4단계 두뇌한국 21 교육연구팀 참여교수의 업적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제2조(평가 방안) 교육연구팀의 평가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자체점검, 연차평가, 중간평가를 실시함.
2. 평가 항목은 한국연구재단 BK 4단계 두뇌한국 21의 평가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함.
3. 평가 시기는 한국연구재단 BK 4단계 두뇌한국 21의 평가 요구시기로 함.
4. 교육연구팀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단과대학별 BK21 추진위원회 혹은 총괄사업본부에서 결과를 요청 시 제출.
5. 교육연구팀 예산반영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외부위원을 초빙하여 교육연구팀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요청.